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994호 2026. 4. 27.(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연화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반시설(우수관로) 설치공사]——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 2-4호선 사업 시행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7호 연희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소로 1-32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94호 2026. 4. 27.(월)

## 차 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60호	도시관리계획(인천감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4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3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5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5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6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6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85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1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5호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반시설(우수관로) 설치공사]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반시설(우수관로)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연희파크 주식회사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810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8차) 접수 사항을 이행
  - 나. 개 요: D400 L=9.10, D800 L=12.90, 날개벽, FRP수문(원형)D800, 기존관 및 BOX폐쇄
4. 하천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43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6. 4.27. ~ 2026. 6.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연희동	428-168		천	310.00	15.00		공유지 (인천광역시)					
2	연희동	428-191		답	89.00	8.38		공유지 (인천광역시)					
3	연희동	428-165		제	302.00	22.23		공유지 (인천광역시)					
4	연희동	428-166		천	253.00	24.67		공유지 (인천광역시)					
5	연희동	428-243		유	20,236.00	83.6		국유지 (환경부)					
6	연희동	428-137		제	434.00	5.28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연희동	428-140		제	844.00	4.84		국유지 (국토교통부)					
<b>합 계</b>					22,468.00	164							

7.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서구청 생태하천과(☎032-560-0913)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 2-4호선) 사업 시행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 사업명: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가감속 완화차로) 설치공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의제 포함)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032-440-3777)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032-560-50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변경)

- 연희파크 주식회사(대표 김시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181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주)호반건설(대표 박철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 파크 2관)

##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외 70필지

- 나. 대지면적 : 65,845㎡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43,274.6132㎡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1,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903,665,049천원

4. 사업기간 : 2023. 6. 30. ~ 2026. 11. 29.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 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사업
- 명칭: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가감속 완화차로)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광로 2-4호선 : B= 3.0m, L= 178.0m, A= 488.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연희파크(주) 대표 김시한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1810호(문래동3가)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9.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자이 외의 권리
						성명	주소	
1	서구 연희동	428-277	유	4.0	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서구 연희동	428-276	답	3.0	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서구 연희동	428-267	답	21.0	2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서구 연희동	428-268	답	148.0	14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서구 연희동	428-269	답	137.0	1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서구 연희동	428-274	잡	28.0	2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서구 연희동	428-272	잡	147.0	14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합계	7필지			488	48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가감속 완화차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 (광2-4호선) 및 부대시설물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7호

## 연희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소로 1-32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연희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소로 1-322호선)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2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322호선)
- 명 칭: 연희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소로 1-322호선)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4,017㎡
- 규 모: L=267m, B=11.5~3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연희파크(주) 대표이사 김시한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81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연희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소로 1-322호선)에 관하여 설치된 일체의 도시계획시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율	소유권자 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성명	주소	권리명세	
계						31,107	4,017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50	체	2,640	19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54	답	497	469	인천광역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55	답	400	399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56	잡	1,769	625	인천광역시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24	임	25,801	2,50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내용: 총 7건(건물번호 부여 5건, 폐지 2건)

연번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폐지)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1	폐지	심곡동 337-12	승학로 233 (심곡동)	26.4.27.	멸실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2	폐지	석남동 산23-9	서달로20번길 17(석남동)	26.4.27.	멸실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부여	원창동 408-2	원창로64번길 45(원창동)	26.4.27.	신축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부여	마전동 426-1	학나래1로 7(마전동)	26.4.27.	신축	두루미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교량 명칭을 인용하여 검단신도시에 힘찬 비상의 염원을 담아 명명
5	부여	원당동 1026-1	이음1로 396(원당동)	26.4.27.	신축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6	부여	석남동 322-104	서달로20번길 15(석남동)	26.4.27.	신축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부여	원당동 1073-1	솔모랭이길 84(원당동)	26.4.27.	신축	"솔모랭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4. 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5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정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513, 팩스 560-2710, 이메일 ruddnre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구	검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암동 일원</li> <li>- 2003. 7.29 경서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li> <li>- 2003. 7.29 공촌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공촌동 47-5~6, 49, 49-6, 50, 50-1~3, 51-1~11, 5-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3-5~7, 294-1~3, 산 36-11~12</li> <li>- 2003. 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연희동 73-1, 73-5, 555-15~17</li> <li>- 2026. 7. 1. 시천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821필지) 시천동 1, 1-1, 1-2, 2,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4, 4-1, 4-2, 4-4, 4-5, 4-6, 4-7,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7, 7-1, 8, 8-1, 9-1, 9-2, 산9-13, 산9-14, 산9-15, 10, 10-1, 11, 11-1, 12-2, 12-3, 12-4, 12-5, 12-6, 산12-12, 산12-13, 13, 13-1, 14-1, 산14-10, 산14-11, 15-1, 15-2, 15-3, 15-5, 16, 16-1, 17-1, 17-2, 산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산17-12, 17-13, 산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8,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9-1, 19-2, 19-3, 19-4, 19-5, 산19-5, 19-6, 19-7, 산19-7, 19-8,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20, 20-1, 20-2, 산20-2, 20-3, 산20-3, 20-4, 산20-4, 20-5, 20-6, 산20-6, 20-7, 20-8, 산20-8, 20-9, 산20-9, 20-10, 산20-10, 20-11, 산20-11, 20-12, 산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산20-17, 20-18, 산20-18, 21, 21-1, 21-2, 21-3, 21-4, 산21-4, 21-5, 산21-5, 21-6, 21-7, 산21-7, 21-8, 21-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2, 22-1, 22-2, 22-3, 22-4, 22-5, 산22-5, 22-6, 산22-6, 산22-7, 22-8, 22-9, 22-10, 22-11, 22-12, 산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3, 산23-3, 산23-6, 24, 24-1, 24-2, 24-3, 산24-4, 24-5, 24-6, 24-7, 24-8, 24-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5, 25-1, 25-2, 25-3, 25-4,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27, 27-1, 27-2, 28, 28-1, 29-1, 29-2, 29-3, 30-2, 30-3, 31, 32-1, 32-2, 32-3, 33, 34, 34-1, 34-2, 34-3, 34-4, 34-5, 34-6, 35, 35-1, 36, 36-1, 37, 37-1, 37-2, 37-3, 37-4, 37-5, 38-1, 38-2, 38-3, 39, 39-1, 39-2, 39-3, 39-4, 4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1, 41-1, 41-2, 41-3, 41-4, 41-5, 41-6, 41-9, 41-10, 41-11, 41-</li> </ul>

12, 41-13, 41-14, 41-15, 41-17, 41-18, 42, 42-1, 42-2, 42-4, 42-5, 42-6, 42-7, 42-8, 42-9, 42-10, 42-11, 42-12, 42-13, 42-14, 43-1, 43-2, 44, 44-1, 44-2, 44-3, 44-4, 45-1, 45-2, 45-3, 46-1, 46-2, 46-3, 46-4, 46-6, 46-7, 46-8, 46-9, 46-10, 46-11, 46-12, 46-13, 47, 48-1, 48-2, 48-3, 48-5, 48-6, 48-7, 48-9, 48-13, 48-14, 48-15,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9-2, 49-3, 49-4, 49-5, 49-6, 50-2, 50-4, 51, 51-1, 51-2, 51-3, 53-1, 53-2, 53-3,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1, 55-2, 55-3, 55-4, 55-5, 55-6,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2, 57-4, 57-5, 57-6, 57-10, 58-2, 58-3, 58-4, 58-5, 59-1, 59-2, 59-3, 60-1, 60-2, 60-3, 60-4, 60-5, 61-11, 61-12, 62, 66-2, 66-3, 66-5, 67, 67-1, 67-2, 67-3, 68-1, 68-3, 68-4, 68-5, 69-9, 69-10, 69-11, 69-19, 69-25, 69-26, 69-30, 81-1, 81-2, 82,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2-10, 82-12, 82-13, 82-14, 82-15, 82-16, 82-17, 82-18, 82-19, 82-20, 82-21, 82-22, 82-23, 82-24, 82-25, 82-26, 82-27, 82-28, 82-29, 82-30, 82-31, 82-32, 82-33, 82-34, 82-35, 82-36, 82-37, 82-38, 82-39, 82-40, 82-41, 82-42, 82-43, 83-1, 83-2, 83-3, 83-4, 83-6, 83-10, 83-11, 83-12, 83-13, 83-14, 83-15, 84-3, 84-4, 86-35, 86-49, 86-50, 86-61, 86-62, 107-1, 109-1, 109-8, 109-9, 118-2, 119-2, 119-4, 119-5, 120, 120-1, 121-8, 125-6, 125-7, 152-13, 153-1, 154-2, 154-3, 154-5, 154-6, 154-7, 154-8, 154-9, 154-10, 155-7, 155-8, 155-12, 158-10, 158-11, 158-12, 158-13, 159-1, 159-2, 160, 160-1, 160-2, 160-3, 160-4, 161-1, 161-2, 161-3, 161-4, 162, 162-1, 162-3, 162-5, 162-6, 162-7, 162-10, 162-11, 162-12, 162-13, 162-14, 162-15, 162-22, 162-23, 162-24, 162-30, 162-31, 162-32, 162-34, 162-53, 162-55, 162-58, 162-62, 162-65, 162-67, 162-85, 162-88, 162-89, 162-90, 162-91, 162-92, 162-94, 162-95, 162-100, 162-101, 162-103, 162-109, 162-110, 162-111, 162-112, 162-113, 162-114, 162-116, 162-117, 162-118, 162-119, 162-122, 162-125, 162-126, 162-130, 162-132, 162-133, 162-134, 162-135, 162-136, 162-137, 162-138, 162-139, 162-140, 162-141, 162-142, 162-143, 162-144, 162-145, 162-146, 162-147, 162-149, 162-150, 162-151, 162-152, 162-153, 162-154, 162-155, 162-156, 162-158, 162-159, 162-161, 162-162, 162-164, 162-165, 162-166, 162-167, 162-169, 162-170, 162-173, 162-174, 162-175, 162-176, 162-177, 162-178, 162-179, 162-180, 162-181, 162-182, 162-183, 162-184, 162-185, 162-186, 162-187, 162-188, 162-189, 162-198, 162-199, 162-200, 162-201, 162-202, 162-203, 162-204, 162-205, 162-206, 162-207, 162-208, 162-209, 162-210, 162-211, 162-212, 162-213, 162-214, 162-215, 162-216, 162-217, 162-218, 162-219, 162-220, 162-221, 162-222, 162-223, 162-224, 162-225, 162-226, 162-227, 162-228, 162-230, 162-231, 162-232, 162-233, 162-235, 162-236, 162-237, 162-239, 162-240, 162-241, 162-242, 162-244, 162-245, 162-246, 162-247, 162-249, 162-250, 162-252, 162-253, 162-254, 162-255, 162-256, 162-257, 162-258, 162-259, 162-260, 162-261, 162-262, 162-263, 162-264, 162-265, 162-266, 162-267, 162-268, 162-269, 162-270, 162-271, 163-4, 163-11, 163-18, 163-19, 163-22, 163-23, 163-24, 163-27, 163-28, 163-31, 163-32, 163-34, 180, 180-1, 180-2, 180-3, 180-6, 180-9, 180-10, 180-11, 180-12, 180-13, 180-14, 180-15, 180-16, 180-17, 180-18, 180-19, 180-21, 180-22, 180-23, 180-24, 180-26, 180-27, 180-29, 180-30, 180-33, 180-34, 180-35, 180-36, 180-37, 180-38, 180-39, 180-40, 180-41, 180-42, 181-2, 181-3, 181-4, 183-1, 184-6, 186, 187, 187-7, 187-8, 187-9, 187-12, 187-13, 187-16, 187-17, 187-18, 187-19, 187-20, 187-21, 191-3, 191-7, 191-8

	경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서동 일원</li> <li>- 청라동으로 종전의 경서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496-10,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518-68, 518-70,518-75,518-76,519-20,519-21,519-26,519-32,519-33,519-37, 520-22,520-30,520-31,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673-56,673-57,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673-68,673-69,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673-77,674-11,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li> <li>- 2026. 7. 1. 오류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122필지)  오류동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1, 1569-2, 1569-3, 1570-1, 1570-2, 1570-3, 1570-4, 1570-4, 1570-5, 1571-1, 1571-2, 1571-3, 1571-4, 1571-5, 1571-6, 1571-7, 1572-1, 1572-2, 1573-1, 1573-2, 1573-3, 1573-4, 1573-5, 1573-6, 1573-7, 1573-8, 1573-9, 1574-1, 1574-2, 1574-3, 1574-4, 1574-5, 1574-6, 1575-1, 1575-2, 1574-4, 1576-1, 1576-2, 1576-3, 1576-4, 1577, 1578-1, 1578-2, 1578-3, 1578-4, 1578-5, 1578-6, 1578-7, 1578-8, 1579-1, 1579-2, 1579-3, 1579-4, 1579-5, 1579-6, 1579-7, 1579-8, 1579-9, 1580-1, 1580-2, 1580-3, 1580-4, 1580-5, 1580-6, 1580-7, 1580-8, 1580-9, 1580-10, 1580-11, 1580-12, 1581-1, 1581-2, 1581-3, 1581-4, 1581-5, 1581-6, 1582-1, 1582-2, 1582-3, 1582-4, 1583, 1583-1,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5, 1606, 1606-1, 1607, 1608, 1608-1, 1608-2, 1609, 1708, 1795, 1796, 1797, 1801, 1802, 1803</li> </ul>
	공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촌동 일원</li> <li>- 2003. 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공촌동 47-5~6, 49, 49-6, 50, 50-1~13, 51-1~11, 51-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5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5~7, 294-1~3,산 36-11~12</li> </ul>

연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희동 일원</li> <li>- 청라동으로 종전의 연희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연희동,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li> </ul>
심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곡동 일원</li> </ul>
청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라동 일원</li> <li>- 종전의 연희동, 경서동, 가정동,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포함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가정동 58-27, 58-29, 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li> </ul>
가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동 일원</li> <li>- 청라동으로 종전의 가정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가정동 58-27, 58-29, 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li> <li>- 2025. 7. 11. 연희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 연희동 621-4, 621-10, 621-15, 621-16, 621-17, 621-18, 621-22, 621-23, 621-24, 621-25, 621-26, 621-27, 621-28, 621-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7. 11. 심곡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 심곡동 126, 126-2, 127-9, 127-10, 128-3,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29-10, 129-11, 129-12, 129-13, 129-14, 129-15, 129-18, 129-19, 129-20, 129-21, 129-22, 129-23, 129-24, 129-25, 129-27, 129-38, 129-39, 129-44, 129-46, 129-47, 129-48, 129-58, 129-59, 129-60, 129-61, 129-62, 129-63, 129-64, 129-65, 129-66, 129-67, 129-68, 129-68, 129-69, 129-70, 129-71, 129-72, 129-73, 129-74, 129-75, 129-76, 129-78, 129-79, 129-80, 129-81, 129-82, 129-83, 129-84, 129-85, 130, 131, 132, 133, 134-2, 231-1, 231-2, 231, 231-3, 231-4, 231-5, 231-6</li> </ul>
신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현동 일원</li> <li>- 가정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가정동 120-13, 120-22~26, 120-35, 120-46~47, 120-69~71, 120-74~76, 120-78, 120-84, 120-90, 120-92, 120-95, 120-98, 120-100, 120-102, 120-104, 120-107, 120-132, 120-134, 120-144, 120-146, 120-149~152, 120-155, 120-157~160, 120-163, 120-173, 120-176~180, 120-182~183, 120-185~190, 203-2, 204-5~6, 204-8~11, 204-14~15, 204-43, 204-64~67, 204-72~75, 204-87~88, 204-91, 204-104, 204-112, 204-114~115, 204-124~131, 204-138~139, 204-141~142, 204-145~148, 204-150, 204-152~154, 204-156~159, 204-161~162, 204-164~168, 204-173~188, 469-5~9, 469-12~13, 470, 572-1, 593-5, 120-91, 120-106, 120-194~197, 203-24~25, 204-69, 204-99, 204-189, 469-15~17</li> <li>-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1, 1-1~23, 2-19, 2-23~24, 2-32~34, 2-37, 2-39~41, 2-62~63, 2-65~67, 2-74~75, 67, 67-5, 68, 68-3, 197-1, 197-5~6, 산4-2, 산4-4, 산4-7~8, 산4-10, 산4-12, 산5-1~2, 산5-5~7, 2-77, 2-79, 65-4, 69-5, 197-7, 197-9, 산4-15, 산4-18, 산5-8, 산6-4, 산9-20, 산18</li> </ul>
석남동	- 석남동 일원
원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창동 일원</li> <li>- 청라동으로 종전의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li> </ul>
가좌동	가좌동 일원

##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025. 7. 11. 제 2277호) 부칙 조항을 반영하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정비

###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513, 팩스 560-2710, 이메일 ruddnre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025. 7. 11. 조례 제2277호) 부칙 조항을 반영하고,
-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제2조 관련)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서구	계	16		
	검암동 경서동	1	검암경서동	검암동, 경서동 일원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1	연희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일원
	청라동	3	청라1동	청라국제도시 내 봉수대로 기준 서측, 중봉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1060, 1-1061, 1-1063, 1-1064, 1-1074, 1-1114, 1-1123, 1-1125, 1-1130, 1-1132, 1-1145, 1-1152, 1-1155, 1-1163 ~ 1-1165, 1-1177, 1-1179, 1-1190, 1-1203, 1-1206, 1-1206, 1-1260, 1-1263 ~ 1-1265, 1-1304, 1-1305, 1-1311, 1-1327, 1-1328, 1-1330, 1-1334 ~ 1-1337, 1-1739, 4-1, 4-5, 101-14, 112-33, 112-34, 116-2 ~ 116-10, 117-1 ~ 117-24, 118-1 ~ 118-9, 119-1 ~ 119-15, 120-1 ~ 120-9, 121-1 ~ 121-24, 122-1 ~ 122-9, 123-1 ~ 123-16, 124-1 ~ 124-9, 125-1 ~ 125-7, 126-1 ~ 126-8, 127-1 ~ 127-12, 128-1 ~ 128-8, 129-1 ~ 129-12, 130-1 ~ 130-8, 131-2 ~ 131-29, 132-1 ~ 132-7, 133-1 ~ 133-32, 134-1 ~ 134-10, 135-1 ~ 135-4, 136-1 ~ 136-17, 137-1 ~ 137-10, 138-23, 138-25  160-1 ~ 160-5, 161-1 ~ 161-3, 162-1 ~ 162-26, 163-1 ~ 163-3, 164-1 ~ 164-3, 165-1 ~ 165-18,

		<p>166-1 ~ 166-5, 167-1 ~ 167-33,  168-1 ~ 168-4, 169-1 ~ 169-11,  170-1 ~ 170-17, 171-1 ~ 171-24,  172-2 ~ 172-9, 172-13,  185-1 ~ 185-5, 186-1 ~ 186-17,  187-1 ~ 187-6, 188-1 ~ 188-5,  189-1 ~ 189-17, 190-1 ~ 190-6,  191-1 ~ 191-6, 192-1 ~ 192-4,  193-1 ~ 193-4, 202-1 ~ 202-5,  202-7 ~ 202-9, 202-12, 202-14 ~  202-16, 203 ~ 203-3, 203-5,  204-1 ~ 204-6, 204-8 ~ 204-10,  205-1 ~ 205-5, 206-2, 206-4,  207-1 ~ 207-5, 207-7</p>
	청라2동	<p>청라국제도시 내 중봉대로 기준 서측,  청라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p> <p>청라동 1-622 ~ 1-634, 1-668, 1-671,  1-733, 1-787 ~ 1-795, 1-797,  1-801, 1-857 ~ 1-868, 1-937~  1-949, 1-952, 1-953, 1-961~  1-966, 1-1048, 1-1051, 1-1052,  1-1072, 1-1087, 1-1096 ~ 1-1121,  1-1128, 1-1129, 1-1208 ~ 1-1215,  1-1217, 1-1218, 1-1223 ~ 1-1245,  1-1247 ~ 1-1255, 1-1266 ~ 1-1273,  1-1277, 1-1309, 1-1332, 1-1338~  1-1353, 1-1355, 1-1358, 1-1360,  9-1 ~ 9-91, 9-93, 9-95, 9-96,  9-98 ~ 9-102, 9-104, 9-106,  9-107 ~ 9-138, 9-140, 9-142,  9-144, 9-146, 10-1 ~ 10-3, 10-5,  10-6, 101-12, 101-13, 106-2,  106-3, 106-5, 106-6, 107-1~  107-5, 108-1 ~ 108-29, 109-1~  109-11, 109-13 ~ 109-33, 110-1 ~  110-13, 111-1 ~ 111-38,  111-40 ~ 111-47, 121-1 ~ 121-32,  113-1 ~ 113-5, 113-7 ~ 113-13,  114-1 ~ 114-28, 115-1 ~ 115-7,</p>

	<p>139-1 ~ 139-5, 140-1 ~ 140-5,  141-1 ~ 141-13, 142-1 ~ 142-21,  143-1 ~ 143-13, 144-1 ~ 144-28,  145-1 ~ 145-19, 146-1 ~ 146-13,  147-1 ~ 147-19, 148-1 ~ 148-14,  149-1 ~ 149-5, 150-1 ~ 150-6,  151-1 ~ 151-5, 152-1 ~ 152-24,  153-1 ~ 153-5, 154-1 ~ 154-6,  155-1 ~ 155-29, 156-1 ~ 156-5,  157-1 ~ 157-23, 158-1 ~ 158-3,  159-1 ~ 159-5, 173-1 ~ 173-10,  174-1 ~ 174-17, 175-1 ~ 175-14,  176-1 ~ 176-11, 177-1 ~ 177-15,  178-1 ~ 178-10, 179-1 ~ 179-13,  180-1 ~ 180-14, 181-1 ~ 181-14,  182-1 ~ 182-11, 183-1 ~ 183-5,  184-1 ~ 184-4</p>
청라3동	<p>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기준 서측  청라동 일원</p> <p>청라동 1-3 ~ 1-10, 1-101 ~ 1-266,  1-269 ~ 1-286, 1-289 ~ 1-294,  1-296 ~ 1-580, 1-582 ~ 1-621,  1-635, 1-637 ~ 1-666, 1-669,  1-673, 1-674, 1-676 ~ 1-731,  1-734 ~ 1-786, 1-796, 1-798 ~  1-800, 1-802 ~ 1-856, 1-869 ~  1-936, 1-955 ~ 1-960, 1-968 ~  1-1050, 1-1054 ~ 1-1059,  1-1065~1-1071, 1-1075 ~ 1078,  1-1088,1-1091, 1-1092, 1-1095,  1-1256,1-1357, 1-1359, 1-1362  ~1-1454,1-1456 ~ 1-1462, 1-1465  ~ 1-1543,1-1545 ~ 1597, 1-1599,  1-1601 ~1-1877, 1-1879, 1-1880,  1-1882 ~1-1934, 1-1936, 2-1,  2-3, 2-4,2-6 ~ 2-9, 2-12 ~ 2-23,  3-1 ~3-37, 3-39 ~ 3-47, 3-49  ~3-53, 5-1 ~ 5-17, 5-19 ~5-46,  5-48 ~ 5-74, 6-6 ~ 6-9,  6-11 ~ 6-16, 6-18, 6-23, 7-1 ~</p>

			7-5, 7-9 ~ 7-19, 8-1 ~ 8-124, 8-126 ~ 8-134, 8-137 ~ 8-169, 11-4, 11-6 ~ 11-19, 11-22 ~ 11-51, 11-58 ~ 11-67, 11-69, 11-70, 13-1 ~ 13-26, 14-1 ~ 14-17, 14-19 ~ 14-23, 15-1 ~ 15-5, 16, 17, 18, 19, 20-1 ~ 20-24, 21-1 ~ 21-10, 22, 23, 24, 25-2 ~ 25-25, 26, 27, 28, 29-1 ~ 27-37, 30, 31, 32, 33, 34, 35, 36-1 ~ 36-30, 37, 38, 39, 40-1 ~ 40-20, 41-1 ~ 41-16, 42, 43, 44, 45, 46-1 ~ 46-53, 47, 48, 49, 50, 51, 52, 53, 54, 55-1 ~ 55-20, 56-1 ~ 56-7, 57-1 ~ 57-6, 58, 59, 60, 61, 62-1 ~ 62-36, 63, 64, 65, 66, 67, 68, 69, 70, 71-1 ~ 71-51, 72, 73, 74, 75, 76-1 ~ 76-7, 77-1 ~ 77-26, 78, 79, 80, 81, 82-1 ~ 82-3, 83-1 ~ 83-4, 84-1, 84-2, 84-5 ~ 84-13, 85-1 ~ 85-6, 88, 89-3, 89-4, 89-7, 92-1, 92-2, 92-5, 92-8, 92-12, 92-15, 92-18, 92-20 ~ 92-29, 95-1 ~ 95-5, 96-1 ~ 96-3, 96-7 ~ 96-22, 97-1 ~ 97-5, 98-3, 99-8, 100-51 ~ 100-82, 100-84 ~ 100-92, 100-94 ~ 100-96, 101-8~101-10, 102-1 ~ 102-20, 103-1 ~ 103-30, 104-1 ~ 104-80, 104-82 ~ 104-218, 105-1 ~ 105-155, 194-2, 245, 194-2, 245
가정동	3	가정1동	서곶로 서측, 인천대로 서측 가정동 일원
		가정2동	서곶로 동측, 경인고속도로 북측 가정동 일원
		가정3동	가정동 430, 545~569, 산105~산108, 산139~산147, 산150, 산156

신현동 원창동	1	신현원창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석남동	3	석남1동	석남동 산113-1~3, 산117-5, 산118-3, 산119-4, -7, 산124-4, 산125-2, 168, 169, 171,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8, 189, 194, 195, 199~202, 204, 206, 208-1, 213, 215, 219, 221, 229,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74, 475,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석남2동	석남동 산139-1, 223-26, -50, -202, -210, -256, -34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640, 642, 650
		석남3동	석남동 산1-1, 산2-1, 산5, 산6, 산10, 산12, 산14, 산15, 산16, 산17-1, 산20-2, 산21, 산23, 산47, 산48, 산49, 산50, 산57, 산58-1, 산59, 산60-1, 산66, 산67, 109-1, 111, 112, 115, 116, 294, 295, -2, 302, 322, 324, 328, 468, 469, 470, 471, 472, 473,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가좌동	4	가좌1동	가좌동 104, 106, 107, 108, 111, 114, 118, 119, 136, 139~140, 142~148,

			150~153, 155, 157~160, 162~164 166, 167, 173, 178, 180, 223, 560, 561, 562, 564, 566, 567, 570, 571, 573, 574, 577~579, 580, 581, 583, 585, 587, 590~592, 602
		가좌2동	가좌동 2, 4, 4-1~4-4, 4-6~4-20, 57, 11~14, 16, 18, 19, 30, 42, 43, 46, 68~71, 75~82, 134, 217, 218~222, 224, 226~236, 237, 238~243, 245~247, 249~253, 256~257, 산21-4, 산22-3, 산23-27, 산24, 산29, 산140, 산141, 산143~145
		가좌3동	가좌동 산7, 72-3~18, 76-4~5, 81, 82, 83, 84, 85, 88-3, 88, 88-4, 89, 89-2, 92, 93-1, 94-1, 94, 95, 96, 97, 97-2, 99-1, 100, 121, 122, 125, 128, 129, 171, 171-3, 174, 184, 186, 189, 192, 192-7, 193-1, 197, 199-2, 206, 206-7, 207, 207-1, 209, 210, 210-6, 212, 215, 215-3, 217, 222, 224, 224-2, 258, 259, 260, 260-1, 261-2, 262, 262-1, 263, 268, 272, 272-12, 274, 277, 278, 280, 492, 524~552, 556, 606, 606-1~18
		가좌4동	가좌동 282, 287, 289~291, 305, 306, 306-1, 308~329, 331~338, 340~342, 344~353, 359~362, 368~373, 375~380, 383, 395, 407~410, 410-10~44, 413, 445, 450, 452, 461, 463~469, 473, 475~477, 480~482, 484, 493, 산174, 산199, 산20

## 관계 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59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정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513, 팩스 560-2710, 이메일 ruddnre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8, 5층(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② 생략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60호

#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가) 교통시설(변경)
        -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40 (40~52)	주간선도로	7,167 (2,138)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 2-495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118 (98.6.12)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변경	광로	3	23	40 (40~52)	주간선도로	7,167 (2,138)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 2-495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118 (98.6.12)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205	10	특수도로	48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변경	소로	1	205	10	국지도로	48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광로 3-23	광로 3-23	· 일부 폭원 변경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
소로 1-205	소로 1-205	· 기능 변경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사용형태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 일반도로	·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

(2)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없음)

(2) 공원(변경 없음)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3,728.4	감)184.2	3,544.2	국고2015-760 (15.10.27)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녹 지	· 감) 184.2m <sup>2</sup>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면적 변경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마) 방재시설(변경 없음)
-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 서구 서곶로 307)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7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2025. 12. 31.)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예우대상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여, 병역이행 가문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 병역명문가 정의 내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안 제2조제3호)
- 지원 및 예우대상 중 가족 신설 (안 제4조제1항)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층 총무과
- 전 화 : ☎ (032)560-4094 FAX (032)560-271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2025. 12. 31.)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예우대상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여, 병역이행 가문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 병역명문가 정의 내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안 제2조제3호)
- 지원 및 예우대상 중 가족 신설 (안 제4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예우대상자</u>“란 <u>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예우대상자</u>“란 <u>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u></p> <p>3. ”<u>예우대상자 가족</u>“이란 <u>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u></p>
<p>제4조(지원 및 예우) ① <u>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4조(지원 및 예우) ① ----- <u>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 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우대)

-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73호

#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없음)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근린생활시설용지(C-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치	면적(㎡)	
2	2	3,094.9	1	677.2	1	1,342	-
			2	664.8			
			3	415.8	3	415.8	
			4	442.1	4	442.1	
			5	449.7	5	449.7	
			6	445.3	6	445.3	

##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	1	677.2	1	1,342	○ 획지 합병을 통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2	664.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4.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 없음)

##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II.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 서구 서곶로 307)

##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라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운영 기준 및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사용허가 및 사용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사용자의 시설 출입 및 반입물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6,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라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운영 기준 및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5조)
- 나. 사용허가 및 사용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 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6조)
- 라. 사용자의 시설 출입 및 반입물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5-16번지(청라라임로 50)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공연·전시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2. 악기 연주 및 무용 등을 위한 방음공간, 마루공간
3. 주민 간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유주방 및 다목적 휴게공간

4.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 등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및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횟수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가 사용하거나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 프로그램
-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동아리 및 단체
- 3. 서구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경우 단체를 우선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취소(환불) 신청을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의 관리 및 설비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판매나 홍보 등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을 행하는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6.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7. 상습적인 예약 취소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①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 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② 사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당일 이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서구 또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

우: 전액 반환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타인 또는 단체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2.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3.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관리 소홀이나 고의·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출입이나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
4. 화재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또는 흥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와 관련)

##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 용 료	기 준	비 고
시설명				
지하1층	동아리실1	4,000	1시간	○ 초과 사용 1시간당 사용료의 100% 가산 ○ 사용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철수) 시간 포함
	동아리실2	2,000		
2층	프로그램실1	5,000		
	프로그램실2	4,000		
	공유주방	40,000		
3층	다목적실	5,000		
	마루공간			
	방음공간 1	6,000		
	방음공간 2	8,000		
4층	다목적실	4,000		
	마루공간	4,000		
	모임공간			

※ 사용료에는 음향시설,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

※ 청소년 전용공간(4층)은 청소년(9세~24세)에 한하여 무료

## 2. 수강료: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10조와 관련)

1.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구분	대상	감면비율	비고
사용료	1. 국가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 3.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수강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0%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교재비 별도
	1.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30%	





[별지 제3호서식]

청라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신청자명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감면내용	강 좌 명				
	감면 근거	※ [별표 2] 수강료 감면대상 택 1			
	감면 비율				
	첨 부	※ 감면대상 증빙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

###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76호

##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없음)
  -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B용도)(변경)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37	7,525.0	1-1	181.0		37	7,525.0	1-1	181.0	
		1-2	184.1				1-2	184.1	
		1-3	188.9				1-3	188.9	
		2	1,239.3				2	1,508.2	
		4	328.0				4	328.0	
		5	155.2				5	155.2	
		6-1	264.7				6-1	264.7	
		6-2	264.3				6-2	264.3	
		6-3	264.1				6-3	264.1	
		6-4	264.1				6-4	264.1	
		6-5	264.6				6-5	264.6	
		7	199.0				7	199.0	
		8	319.1				8	319.1	
		9	270.7				9	270.7	
		11	233.4				11	233.4	
		12	351.2				12	351.2	
		13-1	433.3				13-1	433.3	
		14	979.6				14	979.6	
15	171.8		15	171.8					
		16-1	326.3			16-2	408.4		
		16-2	351.0			17	170.5		
		17	170.5			18	120.8		
		18	120.8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2, 16-1,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변경(분할 후 합병) 16-1획지(326.3㎡)폐지 후 2획지(1,508.2㎡) 및 16-2획지(408.4㎡)로 분할합병 ※ 2획지(증268.9㎡), 16-2획지(증57.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의 형상을 정형화하여 마당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획지의 면적 변경만 있으며 기존건축물 이외의 별도의 건축계획 없음)</li> </ul>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없음)
-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II.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2. 주요내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취약계층 관련 사항 반영(안 제8조제3항 신설)
-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로 명칭 변경 (안 제3장, 제10조)
-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을 위한 위촉직위원 자격 신설(제11조제3항제2호)
-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마련(제23조의2 신설)

-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23조의3 신설)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후 대기과, 전화 560-3302, 팩스 560-2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 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 나.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취약계층 관련 사항 반영(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3장, 제10조)
- 라.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을 위한 위촉직위원 자격 신설(제11조제3항제2호)
- 마.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마련(제23조의2 신설)
- 바.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23조의3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 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명·건강·주거·안전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고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의뢰 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을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피해 현황, 적응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재난 대응 지원사업
2. 취약주거 개선사업
3.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 재해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 위기로 인하여 생명·건강·주거·안전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고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말한다.</li> <li>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ol>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lt;신 설&gt;</p>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의뢰 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p>	<p>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p>
<p>제10조(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p>	<p>제10조(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p>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2. 위촉직위원

가·나. (생략)

<신설>

④ (생략)

<신설>

-----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피해 현황, 적응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신 설>

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재난 대응 지원사업
- 2. 취약주거 개선사업
- 3.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 4. 재해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사업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계 법령 발췌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85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분구로 인한 구립예술단 운영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예술단원의 자격을 명확화하고, 부칙을 제정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단원들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구로 인한 구립예술단 운영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예술단원의 자격을 명확화하고, 부칙을 제정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단원들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자격과 위촉) 제5항 중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을 “분야별 예술단원  
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원 자격 및 위촉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거주지 및 사업장(학교)이 검단구로 변경되는 기존 단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위촉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격과 위촉) ①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u>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u>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⑥ (생 략)</p>	<p>제7조(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분야별 예술단원은</u>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중건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인현동·건동·복성동1가·복성동2가·복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중건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중건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중건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86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예술단원 모집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단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단원 자격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또는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단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응모원서 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함(별지 제1호 서식)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7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예술단원 모집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단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단원 자격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또는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단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응모원서 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함(별지 제1호 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b>응 모 원 서</b>			
성 명	(한자 : )		사 진 (3.5cm×4.5cm)
주 소			
생 년 월 일	(남 / 여)	연락처	
최 종 학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p>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자 :</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p> <p>1. 이력서 1부</p> <p>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p>			

접수번호 No.	<b>접 수 증</b>		
사 진 (3.5cm×4.5cm)	성 명	(한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세)	
	지 원 부 문		
	접 수 자	(인)	

(뒷면)

# 서구립예술단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립예술단 단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구립예술단 응모원서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구립예술단 응모원서를 통해 단원 임기 종료 후 2년까지 서구립예술단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서구립예술단 단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등	서구립예술단 위촉일부터 임기 종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구립예술단 단원 모집 및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오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서구 등 행정기관,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구립예술단 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서구립예술단 지원사업 정보제공, 필요시 단원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서구립예술단 단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 서구립예술단 단원 자격 여부

서구립예술단 단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단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단원의 모집) ① (생   략)</p> <p>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4조(단원의 모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u></p>